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조성사업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한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그동안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추진사항
4.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사유

5.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조건의 협의 또는 조정, 자료의 보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매각을 중지하고 해당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분양 또는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
2.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부지의 위치나 면적 또는 분양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요청자가 분양 또는 매각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 또는 매각절차를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절차를 종료한다.

제3조(이행기간 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하는 이행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날부터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용여부를 회신받은 날까지
2.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의 수용의사를 회신받은 다음 날부터 제2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까지

제4조(관련비용의 청구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는 관련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한 분양광고 수수료
 2. 사업설명회 개최 비용
-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을 중지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련비용을 청구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위치, 면적 등의 현황과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3. 분양 또는 매각 계획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명령 이행결과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미이행한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

제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34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 분양 [] 매각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요청내용	산업단지 (공장) 개요	산업단지명	준공인가일(사용승인일)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부지면적(㎡)	부지면적(㎡)
		위치	
요청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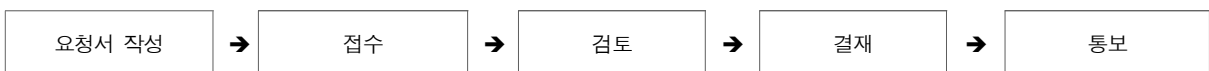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요청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조성사업 개요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한 부지의 위치와 면적
 3. 그동안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추진사항
 4. 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사유
 5.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